

증빙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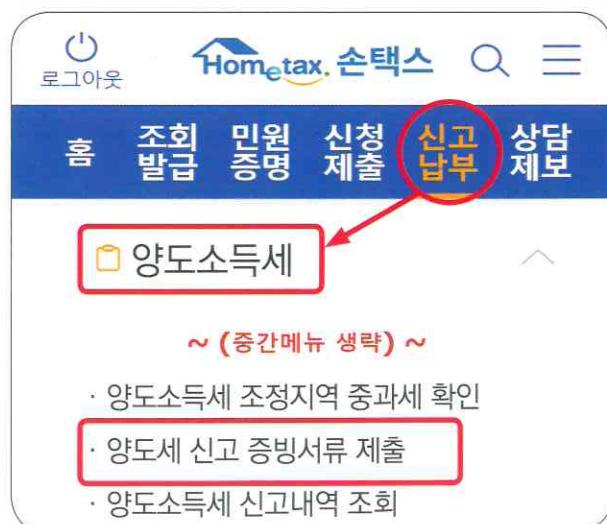
전자신고 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홈택스 로그인 → 신고납부 → 양도소득세
→ 증빙서류 제출

양도소득세 신고



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후 '신고납부' →
'양도소득세' → '증빙서류 제출'



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

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

-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2 전자신고 세액공제

- '21.1.1. 이후 전자 신고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(1건당 2만원)가 가능합니다.

※ 예정신고 1건당 세액공제 2만원으로 연간 한도가 있으며, 확정 신고, 기한후신고,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제외

3 신고방법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

신고도움자료 제공(공동/금융인증서 로그인)

※ 부동산등기자료, 국토부실거래가자료, 취·등록세납부자료, 현금영수증 (중개수수료, 법무사비용 등)

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

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양도소득세 → 증빙서류 제출

-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/납부 - 양도소득세 - 전자 신고이용방법(동영상/매뉴얼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고
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~

더 편리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



모바일 손택스 신고

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손택스는 회원로그인(아이디/지문인증, 공동/금융인증서)과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



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가능



*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고도움 서비스, 간편 모의계산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.

홈택스 신고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
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
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전자신고와
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1 간편신고

한 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
(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)

2 일반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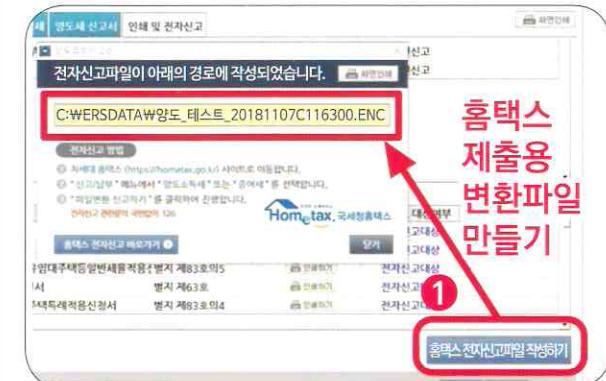
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
(PC에서만 가능)

- 예정신고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
- 확정신고 :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(5월에만 신고 가능)
- 기한후신고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신고
- 수정신고 :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

세무대리인용 홈택스

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'파일 변환 신고하기'가 가능합니다.

1.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변환하기



2. 변환한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기



* 자세한 신고방법은 www.youtube.com 접속-국세청-세무대리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참조